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범죄 위험에 취약한 관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상시 근로자가 없거나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호신용품 등 안전 보장 물품 지급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CCTV, 비상벨 등)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지원계획에 범죄 예방 사항 명시 (안 제4조제2항제7호)

나.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항 신설 (안 제4조의3)

- 상위법에 따른 관내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 실태조사, 안전 보장 물품 지급,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항).
- 예산적 한계를 고려하여,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이거나 실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함 (안 제2항).
-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절차 등 행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함 (안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팩스 : 02)3396-9055
- E-mail : ycr7607@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은 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양 은 미 의원 외 5명

(박창배 의원, 윤관오 의원, 문영희 의원,
강운희 의원, 강현미 의원)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범죄 위험에 취약한 관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상시 근로자가 없거나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호신용품 등 안전 보장 물품 지급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CCTV, 비상벨 등)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지원계획에 범죄 예방 사항 명시 (안 제4조제2항제7호)

나.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항 신설 (안 제4조의3)

- 상위법에 따른 관내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 실태 조사, 안전 보장 물품 지급,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항).
- 예산적 한계를 고려하여,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이거나 실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함 (안 제2항).
-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절차 등 행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함 (안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6(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다. 기 타 :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해당 소상공인의 현황 및 안전 실태에 대한 조사
2.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의 지급
3.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및 이용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제3항에 따라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이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생략)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및 예방에 관한 사항</u>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u><신 설></u>	<u>제4조의3(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u>1. 관내 해당 소상공인의 현황 및 안전 실태에 대한 조사</u>
	<u>2.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의 지급</u>
	<u>3.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u>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및 이용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제3항에 따라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이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